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97
----------	-----

제출일자 : 2013. 3.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에 따른 위원 연임위촉 제한, 위원 청렴성 검증 강화,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 요인 차단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는 1회로 제한,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 회의록 공개 시점을 심의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에 공개도록 함 (안 제4조 제1항 · 제3항, 제11조 제3항)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원장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과 군도시 계획위원회 위원 중民間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안 제3조 제2항)

- 다. 공동위원회와 서면심의는 현행 조례상의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운영하고 있으나, 회의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운영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안 제6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참조

-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2. 20. ~ 3. 12.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군수가 되며”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분의2”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의 공무원”을 “군의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 ②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③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서면심의는 재적위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군수가 되며</u> ,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u>군수가 임명</u> 또는 <u>위촉하며</u> , -----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종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u>3분의 2</u> 이상이어야 한다.	④ ----- ----- -----. ----- ----- ----- <u>50퍼센트</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군의 공무원</u>	2. <u>군의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u>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u>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4항 <u>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u> ②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회의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u>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u>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신설></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p> <p>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p> <p>③ (생략)</p> <p>제11조(회의통지 및 회의록) ① ~ ② (생략)</p> <p><신설></p>	<p>③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u></p> <p>-----</p> <p>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p> <p>④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회의통지 및 회의록)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신설>	<p><u>제13조(공동위원회의 운영)</u>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본다.